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선착순 동호지정 5년 무이자 할부 & 발코니확장비용 무상지원)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서사로 240, 울산다운2지구 내 A-9블록[단지 브랜드명 : 서사시티프라디움]
 ■ 공급대상 : A-9블록 1.252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57세대 (전용면적 55㎡ 557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선착순 동호지정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계약금[주택가격(1천만원)] → 입주시 입주잔금(계약금 및 할부금 제외) → 할부금(5년 뒤 일시납)이며, 발코니 확장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간선택 및 추가품목선택이 불가능하며, 잔여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조성 중인 지구이므로 대지권 등기는 2026년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알 려 드 린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울산다운2지구 A-9블록 1,252세대 중 835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417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0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8.26.)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2023.04.06., 2023.09.07., 2024.01.25., 2025.01.21., 2025.04.28., 2025.06.27., 2025.09.05., 2025.11.25)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8.26.)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835세대) 및 행복주택(417세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입주예정자 선호도 조사에 따라 「서사시티프라디움」으로 단지별 브랜드가 결정되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사이버건보주택(www.울산신혼희망타운.com) 및 팸플릿을 통하여 주택평형 및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공간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일부 해약세대의 경우 최초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4 참고)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기간(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 ~ 16시)에 한하여 가능하며,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사전에 방문 예약 바랍니다.
 *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대표평형인 055.9300A 이며, 실물 주택 관람은 사전 예고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물 견본주택 관람안내

구 분	장 소	견본주택 평형	관람시간	☎ 사전예약 문의처
울산다운2 A-9블록 서사시티프라디움 913동 3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서사로 240	전용면적 55A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1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052-700-1221 (사전 방문 예약)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2026.02.06.)로부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완료하고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기계약자도 무주택자격요건 충족시 계약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는 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본 공고에 따른 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안내

공 고	잔여세대 확인	계약체결 가능시간	계약체결장소
'26.02.06.(금)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공지사항 * 잔여세대를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12시~13시 : 점심시간 제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서사로 240 서사시티프라디움 913동 302호 (사전 방문 예약)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계약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 ⑤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당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이체한도 확인 등)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포함)'는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환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금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구영지점 (☎ 052-211-8100)**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대출 70% 실행시			대출 60% 실행시			대출 50% 실행시			대출 40% 실행시			대출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LTV 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됨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차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울산다운2 신혼희망타운 A-9블록 공공분양 835세대 중 잔여세대 557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면적(㎡)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개시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계)		합계	기계약	금회공급 공공분양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743	186	557		34		
A-9	055.9300A	55A	확장	55.9300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6.7531	517	157	360	24	21	'25.06.30
		55AH	확장	55.9300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6.7531						
	055.9700B	55B	확장	55.9700	24.1534	6.5507	40.1535	126.8276	56.7936	149	4	145	24	7	
		55BH	확장	55.9700	24.1534	6.5507	40.1535	126.8276	56.7936						
	055.9300C	55C	확장	55.9300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6.7531	61	9	52	20	2	
	059.9500T	59T1	확장	59.9500	25.8709	7.0166	43.0088	135.8463	60.8322	7	7	-	1	2	
	059.8500T	59T2	확장	59.8500	25.8278	7.0049	42.9370	135.6197	60.7308	2	2	-	1	2	
	059.7700T	59T3	확장	59.7700	25.7933	6.9955	42.8796	135.4384	60.6496	7	7	-	2	-	

- ※ 잔여세대 등·호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계약 전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052-700-1221)
- ※ 해약세대는 최초 계약시 선택된 읍선내역으로 시공되므로 해약세대 계약자는 해당 읍선내역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따른 읍선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4 참고) - 해약세대 : 902동 1301호(55.93C) / 908동 1801호(55.93A)
-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분양이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더라도 A/AH, B/BH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과 가정어린이집(913동 101호)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 입주개시일(2025.06.30.) 이후 계약자는 AI 스피커 지급이 제외됩니다.

3-1. 5년 무이자 할부 관련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5년 무이자 할부분양 조건으로 '계약금(1천만원) - 입주잔금(용자금 포함) - 할부금(5년 무이자)' 순서로 대금납부하며, 입주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LH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잔금 및 용자금을 완납하여야 입주가능합니다.
- 입주잔금 완납 전까지 세대 내 물품반입, 시공 등은 금지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후에는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 계약금 및 입주잔금 납부 후 할부금 납부가 가능하며 할부금의 '최대 선납할인금'은 입주잔금 납부기한까지 할부금 전액을 일시납할 경우 적용되는 금액으로 현행 연 5%, 5년(1,825일) 선납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선납할인율은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납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선납이율 및 선납일수 차이에 따라 선납할인금액은 달라집니다. (입주잔금 및 용자금은 선납할인 불가)
- 입주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에 납부시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연 7.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며, 납부되지 않은 할부금의 130%에 대하여 LH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LH가 부담하며, 소유권이전비용 및 할부금 완납 이후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후 가능합니다.
- 입주잔금 완납 시점부터 실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등은 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납입 이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즉시 이행되나, 대지권 등기는 별도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안내 예정)

3-2. 공급금액 및 대금납부조건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무상)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지정기간)		입주잔금납부일로부터 5년 후 일시납	
				무상지원	계약금	입주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할부금	최대 선납할인금 (입주시 일시납기준, 변동가능)		
055.9300A	55A 55AH	1층	257,040	6,321	10,000	115,180	55,000	76,860	19,215		
		2층	259,770	6,321	10,000	116,440	55,000	78,330	19,582		
		3층	265,240	6,321	10,000	118,960	55,000	81,280	20,320		
		4층	270,710	6,321	10,000	121,490	55,000	84,220	21,055		
		5층~ 최상층	273,450	6,321	10,000	122,750	55,000	85,700	21,425		
055.9700B	55B 55BH	1층	257,220	6,281	10,000	115,260	55,000	76,960	19,240		
		2층	259,950	6,281	10,000	116,520	55,000	78,430	19,607		
		3층	265,430	6,281	10,000	119,050	55,000	81,380	20,345		
		4층	270,900	6,281	10,000	121,570	55,000	84,330	21,082		
		5층~ 최상층	273,640	6,281	10,000	122,840	55,000	85,800	21,450		
055.9300C	55C	1층	257,040	7,000	10,000	115,180	55,000	76,860	19,215		
		2층	259,770	7,000	10,000	116,440	55,000	78,330	19,582		
		3층	265,240	7,000	10,000	118,960	55,000	81,280	20,320		
		4층	270,710	7,000	10,000	121,490	55,000	84,220	21,055		
		5층~ 최상층	273,450	7,000	10,000	122,750	55,000	85,700	21,425		
059.9500T	59T1	1층	293,360	8,601	10,000	131,940	55,000	96,420	24,105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등의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4.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무상지원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불가)

■ 발코니 확장 안내

-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분양가격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잔여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금회 분양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확장비용이 무상지원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주택형(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침실3	주방/식당	욕실/드레스룸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055.9300A (55A,AH)	기본공사비(A)	66,300	22,089	771	14,220	10,288	18,663	269	1,000천원	5,321천원	
	확장공사비(B)	72,621	22,562	1,843	14,672	10,739	22,254	550			
	계약자부담액(B-A)	6,321	473	1,073	452	451	3,591	281			
055.9700B (55B,BH)	기본공사비(A)	66,219	20,775	9,373	15,698	11,352	3,485	5,536	1,000천원	5,281천원	
	확장공사비(B)	72,500	21,506	10,700	16,383	11,971	6,240	5,700			
	계약자부담액(B-A)	6,281	731	1,328	684	619	2,755	164			
055.9300C (55C)	기본공사비(A)	71,440	23,148	771	21,281	6,435	13,480	6,326	1,000천원	6,000천원	
	확장공사비(B)	78,440	23,619	1,843	22,187	6,770	17,658	6,364			
	계약자부담액(B-A)	7,000	470	1,073	906	335	4,178	38			
059.9500T (59T1)	기본공사비(A)	77,660	12,342	10,998	11,043	17,528	23,447	2,301	1,000천원	7,601천원	
	확장공사비(B)	86,260	12,772	11,975	11,454	18,041	29,682	2,337			
	계약자부담액(B-A)	8,601	430	977	411	512	6,235	36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유형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9300A (55A,55A-I)	현관	2- 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미설치	선택불가			* 중문 선택시 현관-창고쪽 벽면-가구판넬 시공	
	주방	6-1- 아일랜드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 6-1, 6-2, 6-3 중 1개만 선택가능
		6-2-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아일랜드장(벽,가구판넬포함)+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 6-1선택 시, 인조대리석(MMA)마감(주방상판 및 아일랜드장상판), 주방벽 타일시공
		6-3- 카운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출비)]+아일랜드장(벽,가구판넬포함)+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아일랜드장상판)
	침실1	4-1- 드레스룸-불박이가구(화장대포함)	미설치					* 4-1, 4-2 중 1개만 선택가능
		4-2- 불박이가구 일체형(침실장+화장대+드레스룸)						
	침실2 /알파룸	5-1- 불박이장(여닫아형)	미설치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5-2- 불박이장(슬라이딩형)						* 1-1 공간통합형에만 설치가능
		5-3- 드레스룸(시스템가구), 복도팬트리(시스템가구)						* 1-2 공간확장형에만 설치가능
	거실 /복도	6-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일 /소파뒷벽-시트판넬	거실아트월-포세린다일 /소파뒷벽-실크벽지/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 기본형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6-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일 /소파뒷벽-시트판넬		* 1-1 공간통합형(침실2+알파룸 통합)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6-3-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일 /소파뒷벽-시트판넬, 복도벽-시트판넬 및 가구판넬		* 1-2 공간확장형(침실2+드레스룸+복도팬트리)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시스템 에어컨	7-1- 거실+침실1-시스템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침실1) 제공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매립배관(기본형) 미설치				
	7-2- 거실+침실1+침실2-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9- 하이브리드쿡탑(안덕선2구+하이러아트1구)	가스쿡탑 (기본3구)						
조명	9-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바닥마감	10- 롱가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불가					
055.9700B (55B,55B-I)	현관	2- 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미설치	선택불가			* 중문 선택시 현관-창고쪽 벽면-가구판넬 시공	
	주방	6-1- 아일랜드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 6-1, 6-2, 6-3 중 1개만 선택가능
		6-2-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아일랜드장(벽,가구판넬포함)+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 6-1선택 시, 인조대리석(MMA)마감(주방상판 및 아일랜드장상판), 주방벽 타일시공
		6-3- 카운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출비)]+아일랜드장(벽,가구판넬포함)+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아일랜드장상판)
	침실1	4-1- 드레스룸-불박이가구(화장대포함)	미설치					* 4-1, 4-2 중 1개만 선택가능
		4-2- 불박이가구 일체형(침실장+화장대+드레스룸)						
	침실2 /알파룸	5-1- 불박이장(여닫아형)	미설치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5-2- 불박이장(슬라이딩형)						* 1-1 공간통합형에만 설치가능
		5-3- 드레스룸(시스템가구), 복도팬트리(시스템가구)						* 1-2 공간확장형에만 설치가능
	거실 /복도	6-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일 /소파뒷벽-시트판넬	거실아트월-포세린다일 /소파뒷벽-실크벽지/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넬					* 기본형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6-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일 /소파뒷벽-시트판넬		* 1-1 공간통합형(침실2+알파룸 통합)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6-3-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일 /소파뒷벽-시트판넬, 복도벽-시트판넬 및 가구판넬		* 1-2 공간확장형(침실2+드레스룸+복도팬트리)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시스템 에어컨	7-1- 거실+침실1-시스템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침실1) 제공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매립배관(기본형) 미설치				
	7-2- 거실+침실1+침실2-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9- 하이브리드쿡탑(안덕선2구+하이러아트1구)	가스쿡탑 (기본3구)						
조명	9-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바닥마감	10- 롱가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불가					
055.9300C (55C)	현관	2- 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미설치	선택불가			* 중문 선택시 현관-창고쪽 벽면-가구판넬 시공	
	주방	6-1- 발트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 6-1, 6-2 중 1개만 선택가능
		6-2- 카운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출비)]+사각싱크볼+엔지니어드스톤마감						* 엔지니어드스톤마감(주방상판 및 벽)
침실1	4-1- 드레스룸-불박이가구(화장대포함)	미설치		* 4-1, 4-2 중 1개만 선택가능				

	침실2 /알파룸	4-2 불박어기구 일체형(침실장+화장대+드레스룸) 5-1 불박어장(여닫아함) 5-2 불박어장(여닫아함)	미설치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 1-1 공간통합형에만 설치가능
	거실 /복도	6-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알 /소파뒷벽-시트판발	거실아트월-포세린다일 /소파뒷벽-실크벽지/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발	선택불가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 1-1 공간통합형(침실2+알파룸 통합)의 경우에만 설치가능
		6-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알 /소파뒷벽-시트판발			
	시스템 에어컨	7-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제공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 배관배관(기본형) 미설치
		7-2 거실+침실1+침실2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8- 하이브리드쿡탑(안덕선2구+하아라아트1구)	가스쿡탑 (기본3구)		
	조명	9-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바닥마감	10- 롱가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불가
059.9500T (59T1)	현관	2- 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미설치		선택불가
	주방	3-1 받침인장(냉장고장+도어수납장)+사각싱크블+엔지니어드스톤마감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 주방상판 인조대리석, 주방벽 타일시공		
		3-2 카운수납장(냉장고장+장식장(출비))+사각싱크블+엔지니어드스톤마감			
	침실1	4-1 드레스룸-불박어기구(화장대포함)	미설치	※ 4-1, 4-2 중-1개만 선택가능	
		4-2 불박어-기구(침실장+드레스룸(화장대 포함))			
	침실2	5- 불박어장(여닫아함)	미설치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침실3	6- 불박어장(슬라이딩형)	미설치		
	거실 /복도	7-1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알 /복도벽일부-시트판발	거실아트월-포세린다일 /복도벽-실크벽지 및 시트판발	※ 공간옵션 기본형에만 설치가능 ※ 1-1 공간통합형(거실+침실2-통합)의 경우에만 설치가능	
		7-2 거실아트월-대형세라믹다알 /복도벽일부-시트판발			
	시스템 에어컨	8-1 거실+침실1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제공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별도 냉매 배관배관(기본형) 미설치	
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9- 하이브리드쿡탑(안덕선2구+하아라아트1구)	가스쿡탑 (기본3구)			
조명	10- 거실간접조명	미설치			
바닥마감	11- 롱가펫(두께 6mm)	강화합판마루	선택불가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입주잔금(주택도시기금(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5년 무이자 할부조건 적용시 **입주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 선납일수(최대 1,825일)만큼 연 5%(변동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7.5%,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교부)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선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선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1년 이내보다 입주시점이 빠르므로 입주시점)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IV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안내 등

1.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계약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 ⑤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 ※ 계약이후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며 소명불가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오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절차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 수납 불가하며, 계약 당일 계좌이체)
		②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15만원) 사본 * 미확인 시에도 계약 가능하나, 미확인 계약 시 인지세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안내)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공시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③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서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해당자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여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를 포함)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 전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해당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⑩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V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주택가격의 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 보상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내외부 여건, 마감재, AI아파트 서비스, 주택성능등급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8.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2025.06.30.) 이후 계약자는 시 스피커 지급이 제외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경우 건축공정에 따라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 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9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605-82-11744)	[대표업체] ㈜시티건설 (211-88-79240) [공동이행] 주식회사 시티 외 3개사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외 4개사

2026. 02. 06.

